

## 아시아 시장에 대한 면책조항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상의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개인의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 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 그룹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 그룹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 그룹은 어떠한 제 3 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증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CME 그룹 및 “芝商所” 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CME’)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 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 (‘CBOT’)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 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Dow Jones 는 Dow Jones Company,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문에서 규정 및 상품명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NYMEX 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CME 와 CBOT 및 NYMEX 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Recognized Market Operator (공인시장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Automated Trading Service (자동매매서비스)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 25 호 금융상품거래법(1948 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 다. CME 그룹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 다. 본 자료는 한국 및 호주에서 각각 자본시장법 제 9 조 5 항 및 2001 년 기업법(C)와 그 관련 규정상의 정의에 의한 “전문투자자”에의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배포가 제한됩니다.

Copyright © 2018 CME Group and 芝商所. All rights reserved.

## 시장 규정 권고 공지

거래소	<b>CME, CBOT, NYMEX, COMEX</b>
주제	<b>보고 위반 약식제재금</b>
참조 규정	<b>규정 512</b>
권고일	<b>2018 년 11 월 5 일</b>
권고 번호	<b>CME 그룹 RA1812-5</b>
발효일	<b>2018 년 11 월 5 일</b>

본 권고 공지문은 2017 년 10 월 11 일에 발행된 CME 그룹 시장 규정 권고 공지 RA1714-5 를 대체합니다. 본 공지문은 규정 512 에 의거하여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갱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규정 512 는 본 거래소나 CME 청산소에 신고하는 모든 데이터, 기록 및 기타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적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고 규제 책임자나 그가 지정한 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적시적이지 않은 데이터 또는 기록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약식 제재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약식제재금은 개인의 경우, 위반 건당 미화 \$1,000 이상, 미화 \$5,000 이하여야 하며, 회사나 시설의 경우 최대 미화 \$10,000 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규정 512 에 의거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제출 항목 또는 보고 요건과 관련한 결함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대량 거래자(Large Trader), 미결제약정 및 인도 가능한 매수 포지션 관련 보고
- 공식기록원(Registrar) 보고
- 대량매매(Block Trade) 및 관련된 포지션의 교환(Exchange for Relate Positions, "EFRP") 보고
- CME Globex 거래 시 사용되는 사용자 ID (Tag 50)
- CME Globex 거래 시 사용되는 자동 · 수기 표시 항목(Tag 1028)
- CME Globax 거래의 전송자 위치 (Tag 142)
- CTI(고객 유형 표시 목록) 코드
- 프론트엔드 감사추적(Front-End audit trail) 요건
- 가계정(suspense account), 계좌 변경, 계좌 이동 사유 코드 등을 포함한 계좌 관련 보고
- CME 브로커 재지정 거래 기록 요건 (브로커 재지정 거래에 관한 사항은 2016 년 3 월 4 일 발행된 특별공지(Special Executive Report S-76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규제부는 첫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 재량으로 경고 서신을 발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시장운영자(Designated Contract Markets, DCMs)에 대한 CFTC 규정에 따라 직전 12 개월 이내에 동일한 규정을 재차 위반한 개인이나 기관에 경고 서신은 단 1 회만 발행합니다. 규정 512 에 따른 징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보고 위반의 심각성, 빈도 및 영향, 유사한 보고 위반 사례로 인한 당사자의 징계이력 및 식별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시장규제부는 부서 재량으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을 예비조사위원회(Probable Cause Committee)에 회부할 수 있으며, 고발 여부 검토 후, 고발 결정이 내려지면 비즈니스윤리위원회("BCC")의 처분을 요합니다.

규정 512 는 당사자가 약식 제재금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당 제재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시장규제부에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제출된 근거가 결정된 제재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시장규제부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합당한 재심 청구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비즈니스윤리위원회(BCC)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규정 512 조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식제재금은 거래소의 공식적인 징계 조치이며, 따라서 CFTC 규정 9.11(a)에 따라 CFTC 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CFTC 신고 시 거래 플로어와 미국선물협회 기본 시스템에 징계 내용이 게시됩니다. 개인 및 회사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규정 512 에 의거한 제재금과 CME 청산소 규정 852("Surcharges for Errors, Delays and Omissions")에 의거한 제재금이 병과되지는 않습니다.

규정 512 와 852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2. 보고 위반

### 512.A. 일반

본 거래소나 청산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모든 데이터, 기록 및 기타 정보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하고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512.B. 제재

1. 규정 536 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 규제 책임자나 그가 지정한 자는 본 거래소의 관할권에 동의한 일체의 당사자에게 약식 제재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본 거래소나 본 청산소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적시적이지 않은 데이터, 기록이나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개인의 경우 위반 건당 최소 \$1,000 이상, \$5,000 이하, 회사의 경우 \$10,000 이하의 약식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개인과 회사는 약식 제재금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제재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시장규제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를 주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벌금은 확정되며 향후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 512.C. 청문회 및 재심

최고 규제 책임자나 그가 지명한 자가 섹션 B.2.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제재금의 면제나 감경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회사나 개인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규제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의 근거와 원심 결정의 구체적인 오류나 부적절함을 명시하지 못하는 재심 신청서는 기각된다. 재심 신청은 비즈니스윤리위원회

패널("BCC 패널")이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재심 신청인은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BCC 패널 앞에 직접 출두하여 본인의 재심 요청 근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BCC 패널은 과반수 표결로 원심 결정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원심 결정을 보류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않는다.

1. 원심 결정이 거래소 직원의 전횡, 일관되지 않은 결정, 또는 재량권 남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2. 거래소 직원의 권한이나 관할을 넘어서는 경우, 또는
3. 거래소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기 B.1.과 B.2.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규제부는 언제든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는 사항을 예비조사위원회(PCC)에 회부할 수 있다.

#### **852. 오류, 지연 및 누락에 대한 과징금**

거래소 직원은 거래 데이터 및 청산소에 제공된 거래 데이터 및 기타 특정 정보의 오류, 지연 및 누락에 대해 청산 회원사에 부과할 과징금 요율표를 확립하고 수시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과징금은 본 청산소가 수령하며, 이 과징금은 시장규제부, BCC 또는 CHRC 가 거래소 규칙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징계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본 공지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다음 시장규제부 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rin Middleton, manager, Rules & Regulatory Outreach, at 312.341.3286

Robert Sniegowski, Executive Director, Rules & Regulatory Outreach at 312.341.5991

본 공지문과 관련한 미디어 문의는 CME그룹의 기업홍보팀(312.930.3434 또는 [news@cmegroup.com](mailto:news@cmegroup.com))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